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3.04.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LiFE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LiFE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안)마련
- ② LiFE사업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수시 점검
- ③ LiFE사업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피드백 자료에 대한 사업반영 적절성 검토
- ④ 기타 사업추진위원회 위임사항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LiFE사업 운영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교직원 중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LiFE사업 종료 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2023.0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